

제 139 호  
1989. 6.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남  
편집인 : 공보관 박충진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 시보

## 차 례

◎ 조 령	
제 2448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	3
제 2449 호 : 서울특별시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	3
제 2450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4
◎ 규 칙	
제 2289 호 :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개정 .....	4
◎ 고 시	
제 284 호 : 도시공원점용허가 .....	6

(이면계속)

행										
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289 호 : 사료성분등록처리 .....	7
제 291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시행허가 .....	7

㉞ 공 고

제 501 호 : 주민동의 의견청취를위한도시계획변경 (안) 공고 .....	8
제 507 호 : 김포지구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 .....	9
제 519 호 : 도시계획안공고 .....	9
제 523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 .....	9

㉟ 구 고 시

제 12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	10
제 1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	10
제 1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	11
제 180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	11

㊱ 구 공 고

제 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	12
제 33 호 : 주택자재생산업소등록말소 .....	12
제 59 호 : 불법공산품판매및진열금지공고 .....	13

㊲ 사 령

㊳ 공지사항

출석통지 .....	14
------------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448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2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의 급수장치개량공사와 수요자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양수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개량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험사회복지시설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449 호

서울특별시시험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시험사회복지시설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에 제 17 호 및 제 18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울특별시시험부노인종합복지관 가. 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불우한 노인(이하 "제가노인"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및 가사봉사 나. 노인을 위한 교양, 여가, 취미, 이·미용등을 위한 시설운영 다. 운동실, 복욕실, 의무실, 단순 물리치료실등의 운영

18. 서울특별시시험부노인종합복지관 가. 제가노인을 위한 상담 및 가사봉사

나, 노인을 위한 교양, 여가, 취미, 이·미용등을 위한 시설운영다. 운동실, 목욕실, 의무실, 단순 물리치료실등의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④

◎서울특별시조례제 2450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1 조의 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시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 2289 호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개정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 농촌진흥기구설칙에 관한규정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이하 농촌지도소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하부조직) ①농촌지도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 지도기획계, 기술지도계, 기술공보계, 생활개선계, 지도육성계, 소목개발계, 식량작물계, 환경개선계, 재소목락계, 퇴행과수계, 축산계 및 경영유통계를 둔다.

②기술담당관은 농촌지도관으로 계장은 농촌지도사로 보한다. 다만 생활개선계장은 생활지도사로 보한다.

③기술담당관 및 계와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술담당관

식량과물, 환경개선, 화해과수, 저소득  
작, 축산, 경영유형에 관한 업무

## 2. 지도기획계

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  
경 및 실시

나. 소내사무, 문서, 인사 및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소내 예산, 건도작금, 경리, 시  
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촌지도사업 평가

마.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목기  
별 지도인력 관리

바.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활동지원  
사. 소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기술지도계

가. 농민훈련의 실행 계획

나. 작목별 영농기술 교육

다. 겨울영농교육

라. 농기계관리 및 기술교육

마. 농민훈련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바. 기타 농민훈련에 관한 사항

## 4. 기술공보계

가. 기술공보활동 계획 수립 실천

나. 농촌지도용 교본 제작

다. V.T.R스라이드등 시청각 교재제작

라. 방송 보도매체를 통한 기술경  
보의 확산

마.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

바. 농민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5. 생활개선계

가. 농촌 영양개선 지도

나. 농민 건강관리 지도

다. 영양식품의 가공조리 및 저장  
방법 지도

라. 부녀자 학습조직 과제 지도

마. 농촌 육아지도

바. 주거 및 열관리 지도

사. 작업관리 개선지도

아. 농가 경영관리 지도

## 6. 지도육성계

가. 농촌 4-H의 육성지도

나. 4-H 경관 및 아영교육

다. 농촌 청소년의 영농 및 생활  
과제지도

라. 농촌 청소년의 도의 및 영농  
생활지도

마. 농촌 청소년의 체위향상 및 정  
서 생활지도

바. 농과계 학교 졸업생 영농 정  
착 지도

사. 농민후보자 육성 및 사후관리  
지도

아. 농촌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도

## 7. 소득개발계

가. 농의소득원 개발지도

나. 농가 부업 기술지도

다. 부존자원 활용지도

라. 관광농업 개발지도

마.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은업지도

바. 환경보존 기술지도

8. 식량작물제

- 가. 식량작물 기술지도
- 나. 식량작물 유량품종 보급지도
- 다. 집단재배 등 시범사업 지도

9. 환경개선제

- 가. 작물보호지도
- 나. 시비법 개선지도
- 다. 토양정정 및 개량지도
- 라. 농업기상관측 및 농작물 병충해 기본 예찰
- 마. 농약, 비료, 축사오물등 환경보존

10. 화해피수제

- 가. 화해제배 기술지도
- 나. 시범사업 및 추산단지지도
- 다. 피수제배 기술지도

11. 채소목작제

- 가. 시설원예 재배기술 지도
- 나. 채소재배기술 지도
- 다. 특용 및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2. 축 산 제

- 가. 우담가축 보급지도
- 나.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 다. 목야지 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 기술 지도
- 라.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
- 마. 축산물 가공기술 지도

13. 경영유동제

- 가. 농업경영 개선지도
- 나. 협동 영농에 관한 지도
- 다. 농가 경영조사 및 분석
- 라. 전산활용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84 호

도 시 공 원 잠 용 허 가

1. 시소문공원 잠용허가를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도시공원법 제7조2항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잠용허가 내역

가. 위 치 : 중구 의주로2가 16-4  
 나. 면 적 : 153㎡ (정암기 133㎡, 가스판 20㎡)

다. 목 적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설치  
 가스판매설

라. 기 간 : '89.9.1 ~ 11.30

마. 수허가자 :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  
 배 율 수

3. 관계도서는 중구청 공원유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 5. 19.

서울특별시장

## ◎ 서울특별시 제 289 호

사료성분 등록처리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항의 규정  
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 4. 성분등록내역

1989. 6.20

서울특별시 장

1. 제조업체명 : ㈜제일유니버설
2. 소재지 : 영등포구문래동5가4의1
3. 대표자 : 김 중 배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용도	사료성분량			
		조단백질	수분	조섬유	조회분
15-104	발효사료 (보모발효농축액) 배합사료 첨가물 및 양축 가황가용	8%이상	50%이하	0.1%이하	25%이하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1 호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시행허가

1989. 6.20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5 호 (84.11.30)로  
변경 결정되고 동고시 제 779 호 (84.12.  
24)로 지적승인되고 동고시 제 250 호  
(89.5.26)로 조성계획승인되었으며 동공  
고 469 호 (89.6.2)로 공고된 수송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2조와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로구청 공원  
누적피에 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 가. 시행면적 : 1,791.5 ㎡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시행.  
수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 다. 시행내역
- 도로 및 광장 : 도로 및 광장 249.4 ㎡
  - 조경 시설 : 파고라 1개소 33.1 ㎡
  - 휴양 시설 : 의자 12개 38.7 ㎡
  - 유희 시설 : 사 장 19.5 ㎡
  - 운동 시설 : 철봉 1개
  - 편의 시설 : 음수전 1개소 4 ㎡
  - 공원관리 시설 : 조명등 3개, 휴게용  
6개 0.72 ㎡
  - 기타 시설 : 녹 지 1,446.08 ㎡

다. 사업의 시행자  
 한국일보사(주) 대표이사 장 재 국  
 연합통신(주) 대표이사 김 종 규  
 동방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이 수 빈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최가일로부터 14일 이내  
 준공: 1989.7

바. 사용할 토지명세 (생략)

사. 토지소유자: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한국일보사(주)  
 " 수송동 85-1번지 연합통신(주)  
 중구 배명로 2가 150번지 동아생명보험(주)  
 (사용할 토지 있음)

야. 위치도 및 평면도: 별첨 (도면생략)

1. 도시계획법 제 11조, 제 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의 2 제6, 7항 규정에 의거 아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89.6.21-89.7.4 (14일간)  
 나. 공람장소: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공 고

1989. 6.15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01 호

서울특별시장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공고

1)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조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도시계획 시설변경	공 용 의 청 사 (종로경찰서)	종로구경운동 90-18	4,735	4,587.5	감 147.5㎡ (사업 미시행부분 제척)
	학 교 (창경국교)	연건동 275-1 외 2필지	11,262.9	0	감 11,262.9㎡ (제척)
	학 교 (배화여중교)	누상동산 1-33 일대	45,530	43,705	감 1,825㎡ (일부제척)

2) 변경사유: 민원해소와 시설확충계획에 의하여 변경함.

3) 변경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 507 호

김포지구환경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

1. 건설부 공고 제 8 호 ( ' 68.1.23 ) 로 사업시행인가된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제 56 조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1989. 6.20

서울특별시장

가. 환지변경 내용

- 1) 사업명 :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
- 2) 변경면적 : 269,892 ㎡
- 3) 변경필수 : 15 필지
- 4) 변경위치 : 강서구청 입구 - 원당

4거리간 공랑로변

- 5) 변경 사유 : 지구의 도로와 연결의 합리화.

### ◎서울특별시공고 제 519 호

도 시 계 획 안 공 고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6.21

서울특별시장

다

가. 공람기간 : 1989. 6.21 ~ 1989. 7. 5

( 14 일간 )

나.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 도 시 계 획 안

시설명	구분	종류	부별	목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도 로	신설	중로	3	12	620	신수동 8-9	대흥동 30-1	

### ◎서울특별시공고 제 523 호

제 2 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처분

전기공사사업법 제 7 조 위반으로 동법 제 31 조제 1 호에 의거 면허취소처분하

고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6.20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322호	창신기전	한병창	철파1가190	전기공사업법 제7조	면허취소

**구 고 시**

◎강서구고시 제12호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6.20

강서구청장

다 음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가양연합회장 주택조합 조합장 서명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번지 42호의 18필지  
나. 면적: 16,056㎡  
다. 규모: 아파트 13-15층 4동 414세대
4. 사업시행 기간: 1989. 6 ~ 1990 8.30

◎강동구고시 제1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동법 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6.20

강동구청장

다 음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 사업주체: 제일주택 대표 장광일, 윤효순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강동구명일동 268-4, 263-2번지  
나. 대지면적: 1,043㎡  
다. 용 도: 연립주택  
라. 규 도: 3층1동24세대  
마. 건축면적: 1,673.45㎡
  4. 사업시행기간: '89.6 ~ '89.12
- 첨 부: 설계도서(생략)

**◎강동구고시제 1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강동구 고시 제 32 호 ('88.12.27)  
 호로 고시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주  
 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 20 조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규모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6. 20

강 동 구 청 장

- 다 음 -

1. 사업명: 천호동 아남산업(주)주택로  
 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성동구 화양동 151-22  
 아남산업(주)직장주택제 2  
 인가 조합의 2 개조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강동구 천호동 168-6 의 14 필지	과 동
면 적	12,969.03 ㎡	13,497.34 ㎡
규 모	아파트 9-10 층 2 동 148 세대 및 부대 부리시설	아파트 9-12 층 2 동 154 세대 및 부대 부리시설

4. 사업기간: 1988.12 ~ '90. 5

5.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제도임)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	점	중	점	비고
기	정	소	3	6	72	강동구 천호동 168-9	강동구 천호동 167-192	제	지

**◎도봉구고시제 180호**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

1. 건설부공고제 8 호 ('68.1.23) 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365 호 ('80.12.5)  
 로 환지처분된 도시계획시설(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허가하였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6. 20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기: 도봉구 방문동 7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

- 명칭 : 제일종합시장개축 (신축)  
 다. 사업시행규모 : 철근콘크리트라멘  
 조, 지하 2층, 지하 5층  
 ○ 대 지 : 3,158.3 ㎡  
 ○ 건축연면적 : 13,147.11 ㎡  
 라. 사업시행자 : 도봉구 방문동 711,  
 제일종합시장(주) 대표이사 김준환  
 마. 사업기간 : '89.8.20 ~ '90.8.20  
 바. 토지, 건물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사. 위치 및 계획평면도 (생략)

## 구 공 고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 3 호 ('88.4.19) 및 용산구 고시 제 5 호 ('88.6.3) 용산구 고시 제 1 호 ('89.1.17)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호로 4 가 1 번지 일대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생활관 및 음악실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제 85 조 같은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710-3385-7)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6.14

용 산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산 1 의 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2) 명칭 : 성심학원  
 다. 사업시행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24,876 ㎡  
 2) 건축연면적 : 716,15 ㎡  
 3) 기존건축연면적 : 9,303.51 ㎡  
 4) 규모 : 지상 1층 ~ 지상 3층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호로 4 가 1 번지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김재순  
 마. 공사설계 조서 : 준공도면별첨  
 (생략)

### ◎강서구청공고제 33 호

주택자재 생산업소등록말소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소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 43 조 1 항 및 41 조 2 의 3  
 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미이행  
 및 무단 폐업으로 주택자재 생산업  
 자 등록을 말소하였기 주택건설 촉  
 진법 시행령 제 40 조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1989.6.20

강 서 구 청 장

다							
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품목	등록말소 사유	청문실시 기 간	등록말소 자 일
14-24	형제기업	김만영	강서구 화곡4동 77-5	보통시멘 트기와	무단제업 및 정기 집사 마필로 청문 결과 청문불용	89.6. 7 89.6.16	1989. 6.20.
<b>◎중량구청제 59 호</b> <b>불법공산품판매및진입금지공고</b>				품질표시 미이행 상품에 대한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 운반의 금지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산품				1989. 6.14. 중 량 구 청 장			
공 고 내 용							
상 품 명	판매업소	소 재 지	금지사유	금 지 유 형	금지년월일		
의 류	화타인	상봉동 130-135	품질표시 미표시	판매 및 판매를 위 한 진열보관운반금지	89.6.14		
티 셔 츠	디데이	" 129-2	"	"	"		
"	제 프	" 129-85	"	"	"		
남자상복비	다크호스	목동 165 동양소 평센타내	"	"	"		
은 수 저 (우 정)	국보당	상봉동 130-128	"	"	"		
남 방 (심플러트)	인더안	" 130-5	제조할 미표 시	"	"		
남자상복비 (그린패션)	엘필드	목동 165 동양소 평센타내	제조년월일 미표시	"	"		
구 두 (맥콰이어)	맥콰이어	"	품질표시 미표시	"	"		
웬 드 백 (킹스타)	쓰리세븐 가빙	"	"	"	"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명	발령사함	원부서	직급
김현아	자동차관리사업소 파견 ( '89.6.19-89.8.18 )	노원구	지방타자원
오은경	"	서대문구	"
이광욱	"	마포구	"
김태경	"	양천구	"
안희원	"	강서구	"
김준희	"	구로구	"
김효철	"	영등포구	"
장미열	"	관악구	"
조성은	"	서초구	"
김희정	"	강남구	"
권윤미	"	송파구	"

◎ 1989년 6월 2일자 6급공무원직위내처분변경 명제 246호

성명	발령사함	원부서	직급
이상권	'89.5.29자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제 1호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동 법 동조 동항 제 3호 규 정에 의한 직위해제로 변 경 처분함	운수 1과	지방행정주사

◎ 1989년 6월 15일자 지방별정직 7급상당이하공무원임용 명제 247호

성명	발령사함	원부서	직급
신병훈	지방별정직 9급상당 (권산처리사) 에 임함 경찰국 민허과 근무를 명함	신부서	신부
이희동	지방별정직 8급상당 (교양가스관리기사) 에 임함 암사수원지 근무를 명함	"	"
박영원	지방별정직 7급상당 (지도교사) 에 임함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근무를 명함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라정애	지방별정직 7급 상당(훈연교사)에 입함 구로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신구		
김채옥	지방별정직 8급 상당(훈연교사)에 입함 마포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		
◎ 1989년 6월 3일자 보건연구관정규임용 명제 248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급	현부서	직급
양기숙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원 시보
◎ 1989년 6월 19일자 지방고용직상무원 파견및 파견해제 명제 24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미천	자동차관리사업소 파견 (84.6.19~89.8.18)	중랑구	지방타자원	
홍성순	"	성북구	"	
박경선	자동차관리사업소 파견해제	중랑구	"	
임현입	"	성북구	"	
◎ 1989년 6월 17일자 4급공무원집계처분취소 명제 25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문자현	서울고등법원판결(88구8380 89.5.9)에 의하여 1988.3. 29자 "집계" 처분을 동일 자로 취소함	사회과장	서기관	
◎ 1989년 6월 19일자 6급공무원전도 명제 25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건림	송파구	은명구	지방행정주사	
성용탁	"	서초구	"	



6 급 이 하 공 무 원 파 견					경 계 252 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급		
박 수 철	전산담당관 파견 ( '89. 6. 19 - '89. 12. 31 )	총무과	지방통신기사		
황 인 동	"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직급		
유 운 호	"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로		
김 창 결	전산담당관 파견 ( '89. 6. 26 - '89. 12. 31 )	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오 세 용	"	중앙구	"		
임 재 훈	"	성북구	지적기사		
정 기 태	"	동대문구	지방직적기사보		

◎ 1989년 6월 26일자 보건직 7 급 공 무 원 전 임

경 계 253 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급
김 종 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경기도 교육위원회 연천군 교육청	지방보건의기사보

◎ 1989년 6월 20일자 기술직공무원 징계 처 분

경 계 254 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위	직 급
김 근 섭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에 처함	선유수원지 사무소	소 장	지방시설기공
최 주 하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1인사위원 회의결사항)	한강관리 사업소	소 장	지방시설부기공
안 상 구	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결 책에 처함	전속지도과		지방건축기사

서울특별시장

**공지사항**

[별지 제2호서시]

**출 석 통 지 서**

인성명	최 일 훈 (催 鎭 勳)	소속	도봉구보건소 방역과
사본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1동 277번지	직명	지방유기원가동역 10등급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번동 462의 5호		
출석이유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권 부여		
출석일시	1989년 7월 4일 14시 00분		
출석장소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		

유의사항 1. 진술은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붙여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9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술권포기서**

인성명		소속		직명	
사본적					
주소					

198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8년 월 일

성명

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성명	조 동 오 (曹 東 吳)	소속	마포구 망원1동
	본적	경상북도 김천시 병화1동 275	직명	지방조사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1가 97-60		
	출석이유	경제협회의에 대한 진출권 부여		
	출석일시	1989 년 7 월 4 일 14 시 00 분		
	출석장소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		

유의사항

1. 진출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출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인까지 도착하도록 진출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년 원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출서 또는 진출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9 년 6 월 15 일  
서울특별시청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진 출 권 포 기 서

인 적 사	성명		소속	
	본적			
	주소			

198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출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8 년 월 일  
성명 ①

서울특별시청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